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 번	안 호	24 - 164
--------	--------	----------

제출년월일: 2024. 11.

제 출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국공립어린이집 보육 수요를 충족하고자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을 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마포구의회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마포구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20조 ~ 제22조
-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제12조

○ 추진 필요성

- 기존 위탁 운영 및 신규 설치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 선정을 통한 안정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 사업의 전문성 제고
-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전환시설 기존 운영자에게 운영권 보장(최초운영권 5년, 서울시 지침)

다.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구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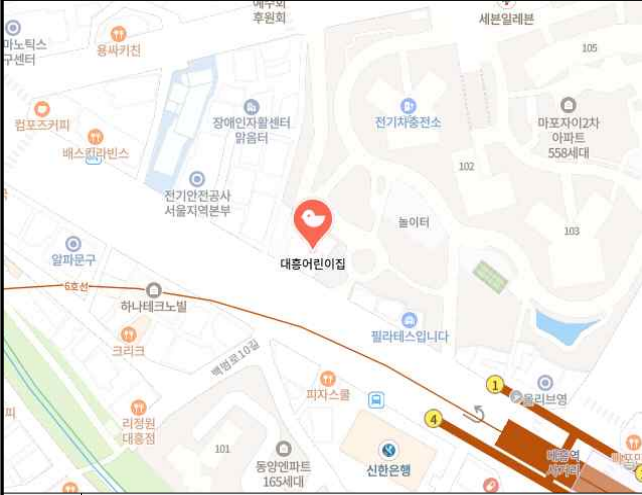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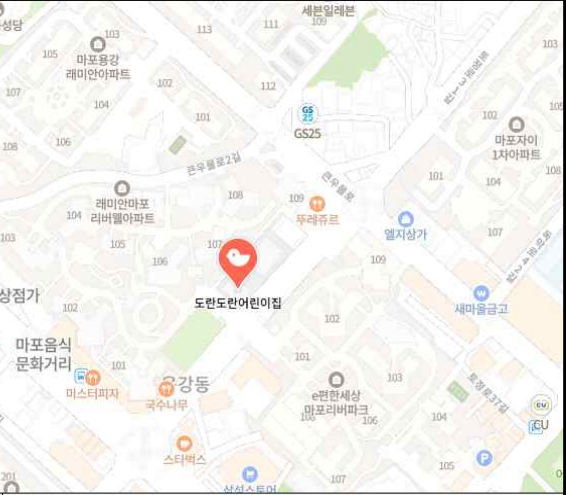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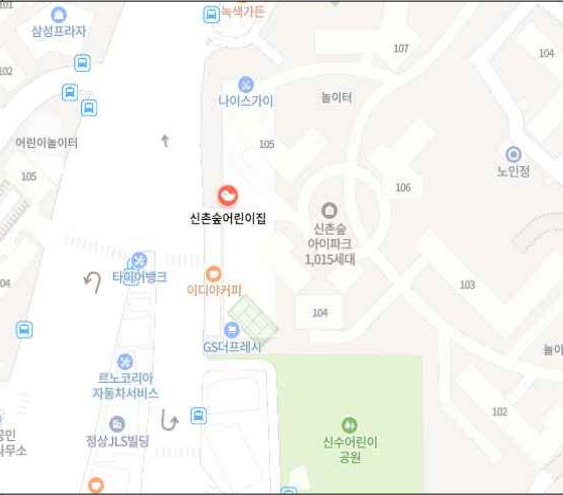
라. 위탁시설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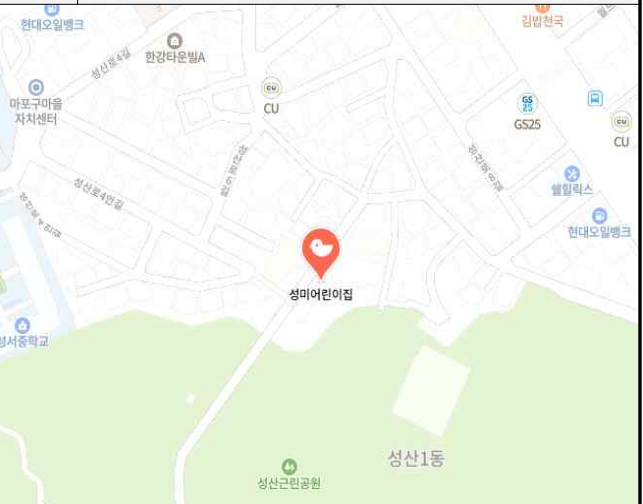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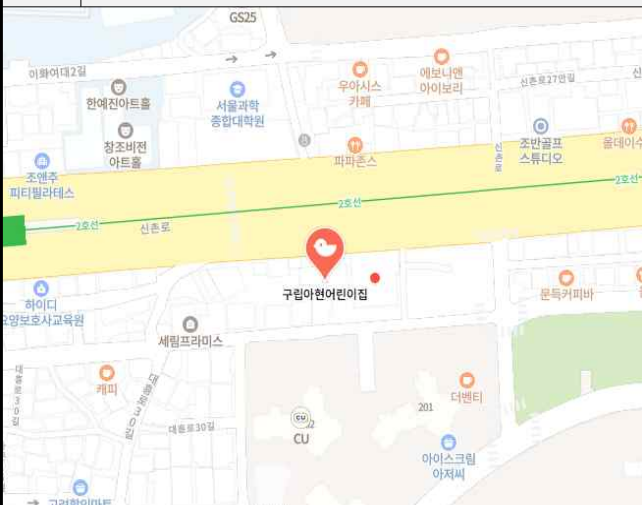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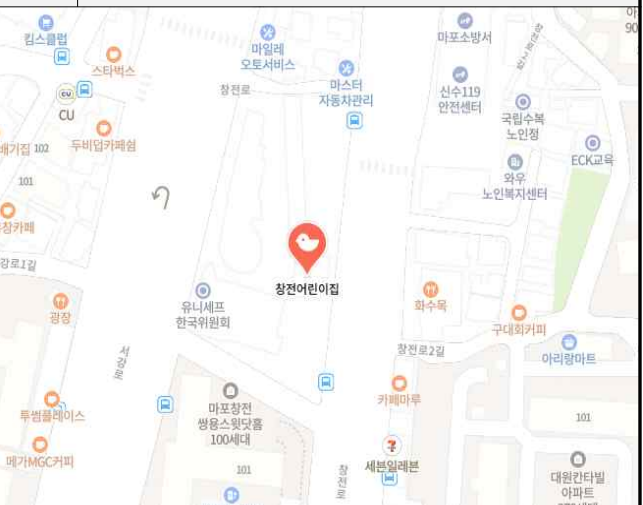
○ 소재지 및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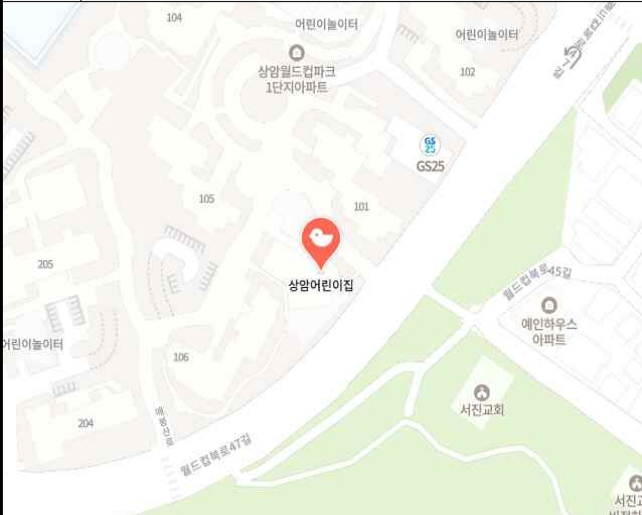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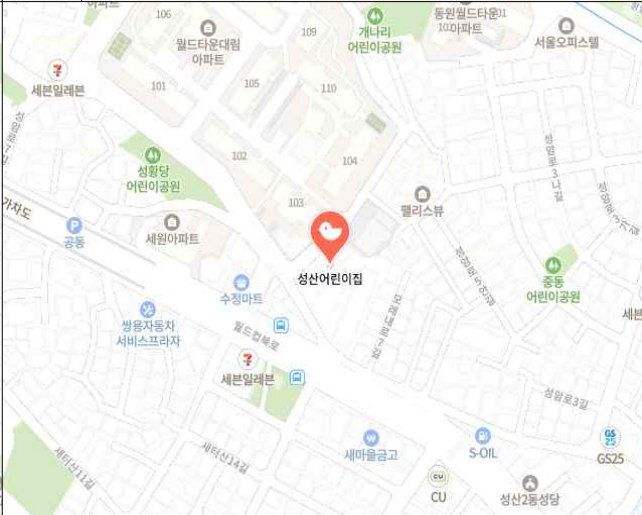
연번	어린이집명	소재지	규모		비고
			면적(㎡)	정원(명)	
1	대흥	백범로 79 (대흥동)	732	74	
2	도란도란	토정로31길 31 (용강동)	237	45	
3	신촌숲	광성로 17 (신수동, 신촌숲아이파크 관리동)	625	71	
4	아름드리	월드컵로 338 (상암동, 월드컵파크 3단지)	233	37	
5	월드컵	월드컵북로 501 (상암동, 월드컵파크9단지 관리동)	207	42	
6	GS예원	창전로 26 (신수동, 서강GS아파트 관리동)	116	21	
7	서교	월드컵북로7길 43 (서교동)	498	59	
8	연남	연남로7길 32-10 (연남동)	784	47	
9	서강	와우산로30길 79 (창전동)	1,107	79	
10	성미	월드컵북로15안길 19 (성산동)	590	68	
11	아현	신촌로 210 (아현동)	1,449	58	
12	창전	창전로 69 (창전동)	1,177	45	
13	마포	양화로18안길 21 (동교동)	2,227	42	
14	노고산	신촌로20길 15 (노고산동)	306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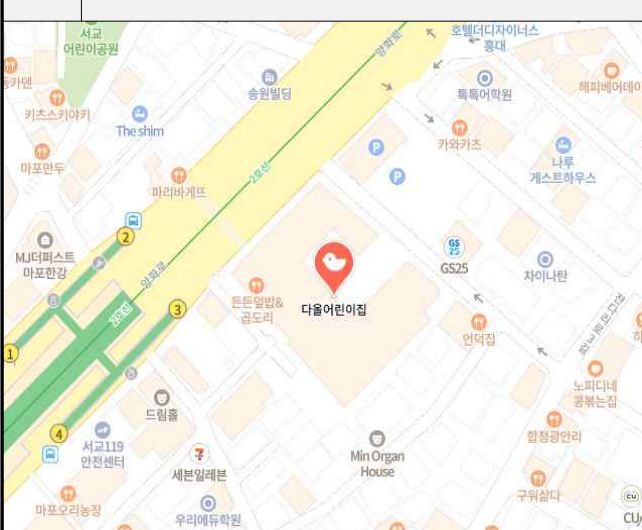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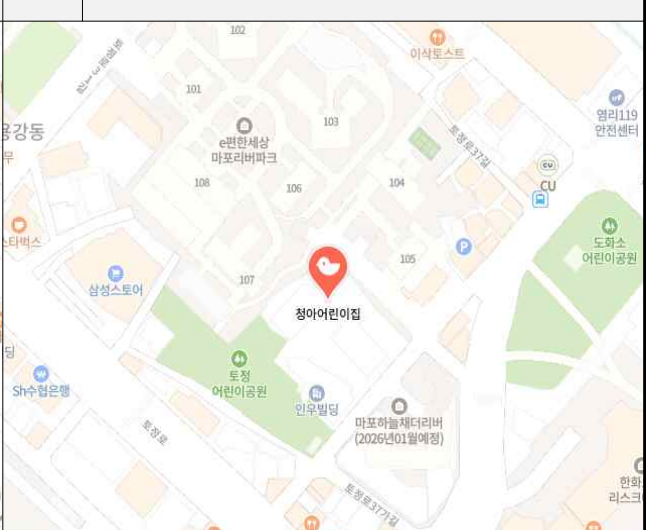
연번	어린이집명	소재지	규모		비고
			면적(㎡)	정원(명)	
15	상암	월드컵북로47길 8 (상암동, 월드컵아파트 1단지)	978	65	
16	성산	월드컵북로30길 14 (성산동)	1,069	99	
17	중동	월드컵북로38가길 8-1 (성산동)	1,008	81	
18	신덕	만리재로 34 (공덕동)	578	69	
19	리버웰	토정로31길 23 (용강동)	349	48	
20	진선미	마포대로4나길 28 (도화동)	1,612	71	
21	그랑	대흥로 175 (대흥동, 마포그랑자이 관리동)	582	71	
22	크니크니	월드컵로1길 14, 1층 (합정동)	410	59	
23	다울	양화로 72, 1층 (서교동)	382	47	
24	청아	토정로35길 17 (용강동)	217	45	
25	신석	대흥로 11 (신석동)	1,236	150	
26	상암누리	상암산로1길 71 (상암동,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302	65	
27	공덕삼성	마포대로 115-12 (공덕동, 공덕삼성아파트 관리동)	352	79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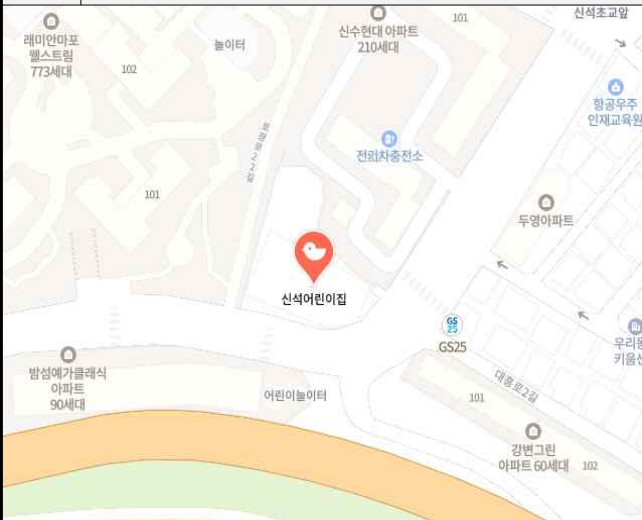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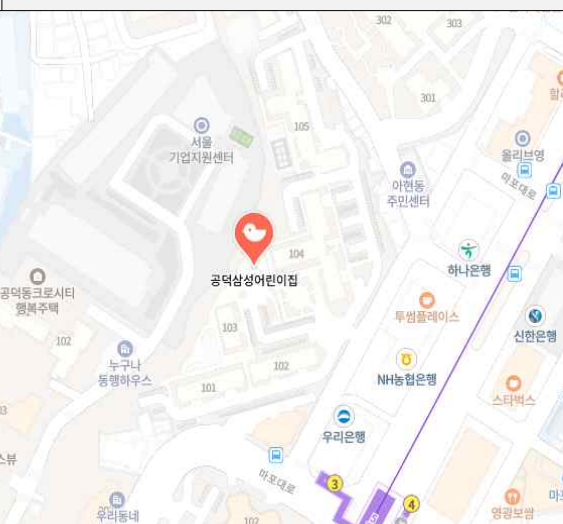
○ 위치도

1	대흥	2	도란도란
			
3	신촌숲	4	아름드리
			
5	월드컵	6	GS예원
			

7	서교	8	연남
			
9	서강	10	성미
			
11	아현	12	창전
			

13	마포	14	노고산
			
15	상암	16	성산
			
17	중동	18	신덕
			

19	리버헬	20	진선미
			
21	그랑	22	크니크니
			
23	다울	24	청아
			

25	신석	26	상암누리
			
27	공덕삼성		
			

마. 민간위탁기간 : 5년

연번	어린이집명	위탁기간	비고
1	대흥	2025. 03. 01. ~ 2030. 02. 28.	
2	도란도란	2025. 03. 01. ~ 2030. 02. 28.	
3	신촌숲	2025. 03. 01. ~ 2030. 02. 28.	
4	아름드리	2025. 03. 01. ~ 2030. 02. 28.	
5	월드컵	2025. 03. 01. ~ 2030. 02. 28.	
6	GS예원	2025. 03. 01. ~ 2030. 02. 28.	
7	서교	2025. 05. 01. ~ 2030. 04. 30.	
8	연남	2025. 05. 01. ~ 2030. 04. 30.	
9	서강	2025. 05. 01. ~ 2030. 04. 30.	
10	성미	2025. 05. 01. ~ 2030. 04. 30.	
11	아현	2025. 05. 01. ~ 2030. 04. 30.	
12	창전	2025. 05. 01. ~ 2030. 04. 30.	
13	마포	2025. 05. 01. ~ 2030. 04. 30.	
14	노고산	2025. 05. 01. ~ 2030. 04. 30.	

연번	어린이집명	위탁기간	비고
15	상암	2025. 05. 01. ~ 2030. 04. 30.	
16	성산	2025. 05. 01. ~ 2030. 04. 30.	
17	중동	2025. 05. 01. ~ 2030. 04. 30.	
18	신덕	2025. 05. 01. ~ 2030. 04. 30.	
19	리버웰	2025. 05. 01. ~ 2030. 04. 30.	
20	진선미	2025. 05. 01. ~ 2030. 04. 30.	
21	그랑	2025. 05. 07. ~ 2030. 05. 06.	
22	크니크니	2025. 06. 01. ~ 2030. 05. 31.	
23	다울	2025. 06. 10. ~ 2030. 06. 09.	
24	청아	2025. 10. 15. ~ 2030. 12. 14.	
25	신석	2025. 11. 01. ~ 2030. 10. 31.	
26	상암누리	2025. 11. 01. ~ 2030. 10. 31.	
27	공덕삼성	개원일로부터 5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및 선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2024. 10. 기준)

(단위: 천원)

연번	어린이집명	계	국비	시비	구비
1	대흥	313,492	73,825	161,014	78,653
2	도란도란	355,044	88,328	176,515	90,201
3	신촌숲	304,456	12,488	210,943	81,025
4	아름드리	248,113	9,852	171,806	66,455
5	월드컵	216,125	12,416	191,897	11,812
6	GS예원	154,673	4,671	107,623	42,379
7	서교	335,356	78,466	173,305	83,585
8	연남	300,303	77,871	146,939	75,493
9	서강	566,329	110,554	301,623	154,152
10	성미	364,556	81,735	193,899	88,922
11	아현	452,289	112,702	224,559	115,028
12	창전	396,912	91,012	212,538	93,362
13	마포	274,398	69,183	136,073	69,142
14	노고산	352,722	92,709	171,459	88,554

연번	어린이집명	계	국비	시비	구비
15	상암	435,354	104,271	224,397	106,686
16	성산	594,096	131,360	322,433	140,303
17	중동	465,519	104,175	249,473	111,871
18	신덕	399,097	94,977	204,330	99,790
19	리버웰	221,499	7,867	154,228	59,404
20	진선미	622,831	145,467	320,169	157,195
21	그랑	271,455	12,275	175,318	83,862
22	크니크니	415,019	90,810	215,328	108,881
23	다울	234,906	8,258	161,735	64,913
24	청아	326,667	83,945	158,024	84,698
25	신석	732,323	170,003	385,732	176,588
26	상암누리	261,331	8,064	188,341	64,926
27	공덕삼성	0	-	-	-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20조에 따라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구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신규 설치 및 기존 위탁 운영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민간위탁하고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함에 있어 기존 운영자에게 운영권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통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20조 ~ 제22조
-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제12조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20조(위탁계약 등)

-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구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 ②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구립어린이집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21조(수탁자 모집)

-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22조(위탁기간)

- ①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단,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평가 결과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제12조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 ① 시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신축하거나 서울특별시에서 매입하는 임대주택 내의 의무보육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신축하는 공동주택 내에는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③ 시장은 기존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어린이집 운영자와 합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